

국가대표 선발 규정

사단법인 대한근대5종연맹

대한근대5종연맹 국가대표 선발 규정

2011. 2. 23. 정기이사회 제정
2013. 5. 21. 임시이사회 개정
2015. 2. 24. 임시이사회 개정
2017. 3. 9. 정기이사회 개정
2017. 10. 16. 정기이사회 개정
2018. 12. 5. 임시이사회 개정
2021. 1. 28. 정기이사회 개정
2021. 8. 27. 임시이사회 개정
2022. 3. 17. 임시이사회 개정
2022. 10. 8. 임시이사회 개정
2023. 2. 3. 정기이사회 개정
2023. 9. 10. 임시이사회 개정
2024. 11. 26. 임시이사회 개정
2025. 3. 6. 정기이사회 개정
2026. 4. 27. 임시이사회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대표의 공정한 선발 및 합리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대표”란 국가대표 지도자 및 선수를 말한다.
2. “국가대표 지도자”란 국가대표 선수의 훈련 등을 지도하기 위해 대한체 육회(이하“체육회”라 한다.) 및 대한근대5종연맹(이하“본 연맹”이라 한다.)이 선발한 사람을 말하며, 근대5종 국가대표 선수의 구성과 역할에 따라 총 감독, 감독, 코치로 구분한다.
3. “국가대표 선수”란 체육회 또는 본 연맹이 국제종합경기대회(이하“종합대회”라 한다.) 또는 근대5종 국제대회(친선국제대회는 제외한 세계선수권대회 및 월드컵시리즈(결승 포함), 아시아선수권대회를 말한다. 이하“국제대회”라 한다.)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로 파견하기 위하여 선발·확정한 사람을 말한다.
4. “경기임원”이란 종합대회 또는 근대5종 국제대회에 출전하는 국가대표 지도자와 전담팀의 팀원으로 구성된 전문인력을 말한다.
5. “전담팀”이란 국가대표 지도자 및 선수를 지원하기 위해 의료, 컨디셔닝, 체력, 기술, 심리, 영상분석 및 훈련장비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을 말하며, 의료 면허 소지자와 트레이너로 구분한다.

6. “경기경력”이란 체육회 경기인등록규정에 따라 선수로 등록하고 활동한 경력으로 본 연맹이 증명할 수 있는 경력을 말한다.

7. “경기 지도경력”이란 체육회 경기인등록규정에 따라 지도자로 등록하고 선수를 지도한 경력으로 본 연맹이 증명할 수 있는 경력을 말한다.

8. “전문스포츠지도사”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또는 제3항에서 정한 자격을 보유한 사람을 말한다.

9. “생활스포츠지도사”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제5항 또는 제6항에서 정한 자격을 보유한 사람을 말한다.

10. “강화훈련”이란 본 연맹에서 선발한 선수 및 지도자가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국가대표 선수촌 또는 체육회에서 인정하는 장소 등에서 실시하는 합숙훈련을 말한다.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본 연맹에서 실시하는 국가대표 선발과 관련하여 법령 및 다른 규정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국가대표지도자 및 전담팀의 선발 절차) ① 본 연맹의 경기력향상위원회(이하“경향위”라 한다.)는 국가대표 지도자의 선발 자격, 선발 일정, 평가 방식, 전형별 평가위원 구성 등 세부사항을 정한 후, 국가대표 지도자 선발 공고를 1개월 이상 실시한다. 경기력향상위원회는 공고에 따라 접수된 국가대표 지도자 후보자를 평가·심의하여 이사회에 추천한다. 본 연맹 이사회는 추천받은 후보자 중 국가대표 지도자를 선발하고,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단,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체육회와 사전협의 후 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본 연맹 경향위는 전담팀의 선발 자격, 선발일정 평가 방식, 전형별 평가위원 구성 등 세부사항을 한 후, 국가대표 전담팀 선발 공고를 1개월 이상 실시한다. 경향위는 공고에 따라 접수된 국가대표 전담팀 후보자를 평가·심의하여 본 연맹 장에게 추천한다. 본 연맹 장은 추천받은 후보자 중 국가대표 전담팀을 선발하고 체육회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단,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체육회와 사전협의 후 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국가대표 지도자 및 전담팀을 외국인으로 선발하는 경우에는 공개경쟁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세부 선발 자격 수립, 선발 일정의 사전 공고, 후보자 평가·심의, 체육회 승인 절차는 동일하게 적용한다.

④ 본 연맹 장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인사혁신처 고시 등에 따라 해당 단체가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될 경우,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 정부 부처의 채용 관련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본 연맹 장의 국가대표로서 요구되는 윤리성을 지닌 지도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평가기준을 수립·적용하여야 한다.

1. 선수 보호 및 인권 보장을 위한 관련 교육 이수 여부
2. 과거 지도 활동 중 인권침해 여부 및 징계처분 이력
3. 선수 인권 보호 및 건전한 스포츠 문화 조성을 위한 기여 실적 등

⑥ 국가대표이하 우수선수(청소년대표, 꿈나무선수) 전담지도자는 제2항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다만 전문지도자(후보선수 포함)는 기선발된 선수 중 다수 선수 선발 지도자, 성적 상위 선수의 지도자 순으로 결과에 따라 경향위에서 심의·추천하면 본 연맹의 장이 선발하고 체육회에서 확정한다.

⑦ 국가대표 강화훈련 외에 특수 목적으로 별도 프로젝트팀의 운영이 필요할 경우, 별도의 지침으로 지도자를 선발할 수 있다.

제4조의2(자체 국가대표 운영) 연맹이 대회 참가를 위하여 자체적으로 국가대표를 선발하는 경우에는 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절차를 준용한다.

제5조(국가대표 지도자의 자격) ① 국가대표 지도자는 본 연맹의 지도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선발 당시 지도자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은 한시적으로 본 연맹 지도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국가대표 지도자 중 총 감독과 감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근대5종 지도경력 5년 이상과 근대5종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2. 근대5종 지도경력이 4년 이상 5년 미만이지만 체육관련 학과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근대5종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3. 근대5종 지도경력이 2년 이상 5년 미만이지만 2년 이상 국가대표 선수 경력과 근대5종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4. 근대5종 지도경력이 1년 이상 5년 미만이지만 올림픽대회 또는 세계선수권대회(개인)에서 메달을 획득하고 근대5종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5. 외국인은 2년 이상의 해당 국가의 국가대표 선수 경력 또는 5년 이상의 근대5종 지도경력이 있는 사람

③ 국가대표 지도자 중 코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근대5종 지도경력 2년 이상과 근대5종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2. 근대5종 지도경력이 1년 이상 2년 미만이지만 체육관련 학과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근대5종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3. 근대5종 지도경력이 1년 미만이지만 올림픽대회 또는 세계선수권대회(개인)에서 메달을 획득하고 근대5종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4. 근대5종 지도경력이 1년 미만이지만 2년 이상 체육회 강화훈련 경력, 올림픽대회 또는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경기대회 출전 경력과 근대5종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5. 외국인은 2년 이상의 해당 국가의 국가대표 선수 경력 또는 2년 이상의 근대5종 지도경력이 있는 사람
6. 세부종목코치는 해당 종목에서 제1호에서 제5호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④ 국가대표 지도자 정원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여성의 비율이 3년 이상 연속하여 100분의 20 미만에 머무르는 경우에는 시정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정 방안에는 여성 지도자 대상 교육·양성 프로그램 운영 등 구체적인 조치를 포함할 수 있다. 다만, 지도자 선발 공고에 따라 여성 지원자가 없거나 자격요건을 갖춘 여성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2조제7호에도 불구하고, 본 연맹이 인정한 민간체육시설 지도경력 또는 해외 지도경력을 인정할 수 있으며, 세부 종목 전문 지도자의 자격도 승인할 수 있다.

⑥ 국가대표 지도자는 종합대회 및 종목별 대회의 파견을 위하여 국제근대5종연맹(UIPM)이 요구하는 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제5조의2(국가대표 지도자의 계약기간) 국가대표 지도자의 계약기간은 2년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종목 특성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체육회와 협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제5조의3(국가대표 지도자의 재임용)

① 국가대표 지도자는 최초 임용기간 만료 후 종합대회 또는 근대5종 국제대회의 주기 등을 고려하여 1회에 한하여 재임용 될 수 있다.

② 재임용은 지도역량, 올림픽 등 종합대회와 근대5종 국제대회에서의 성과, 인성 및 품행, 선수 관리능력, 공정성 및 윤리성 등 국가대표 지도자로서의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가 우수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

③ 경향위는 제4조제1항의 절차에 따라 국가대표 지도자의 재임용에 관한 평가·심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추천한다. 이사회는 추천된 재임용 후보자를 국가대표 지도자로 선발하고,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재임용을 확정한다.

④ 재임용의 경우에 한하여 공개채용 절차를 생략할 수 있으며, 재임용 기간 만료 후에는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6조(국가대표 전담팀의 자격)

① 의료 면허 소지자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0조의6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자로 한다.

② 트레이너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0조의6제1항제4호에 따라 해당 회원종목단체가 인정하는 분야별 자격증을 보유하고,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의 활동 경력을 갖춘 자로 하되,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전문스포츠지도사, 생활스포츠지도사 또는 제9조의2에 따른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을 보유한 자를 선발하도록 권장한다.

③ 우수 지도자 양성을 위해 올림픽대회 또는 세계선수권대회(개인)에서 메달을 획득하고 근대5종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을 선발할 수 있으며, 서류심사시 입상경력에 20점을 가산하여 평가한다.

제7조(경기임원의 선발 절차) ① 올림픽대회 및 아시아경기대회에 출전하는 경기임원은 체육회

강화훈련에 참가하는 국가대표 지도자 및 전담팀 중에서 본 연맹 경향위의 심의를 거쳐 본 연맹의 장이 추천하면 체육회에서 확정한다.

② 제1항의 경기임원을 교체할 경우에는 체육회와 사전 협의 후 선발하여야 하며, 선발 방법은 본 연맹 경향위 심의를 거쳐 본 연맹의 장이 한다.

③ 제1항 이외의 경기임원을 선발하는 경우에는 체육회 강화훈련 지도자 선발 절차에 따른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본 연맹 경향위의 심의를 거쳐 본 연맹의 장이 추천할 수 있다.

1. 국가대표 선발을 선수와 지도자를 포함한 팀으로 선발하는 경우

2. 체육회 강화훈련 지도자 정원이 없고 국가대표 선수를 지도하는 지도자를 특별히 선발하여야 하는 경우

3. 국가대표 지도자를 선발 확정된 이후 긴박한 상황이 발생하여 공개선발을 할 수 없는 경우

④ 본연맹 경향위가 제3항제1호의 경기임원을 선발할 경우 사전에 선발과정 등 세부사항을 정하여 심의일 1개월 이전에 공고한다. 단,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체육회와 사전협의 후 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⑤ 경기임원을 선발한 때에는 즉시 선발사유를 포함하여 선발개요를 공고하여야 한다.

⑥ 올림픽대회 및 아시아경기대회 이외의 종합대회의 경기임원 선발은 본 연맹 경향위의 심의를 거쳐 본 연맹의 장이 결정한 후 체육회에 추천한다.

⑥ 근대5종 국제대회의 경기임원 선발과 관련한 사항은 동 규정을 근거로 하여 경향위에서 심의, 추천하여 본 연맹의 장이 정한다.

제8조(국가대표 지도자 선발인원) ① 본 연맹 사업계획 및 체육회의 강화훈련 계획에 의거 선발인원을 정한다.

제9조(국가대표지도자의 선발기준) ① 국가대표지도자(총감독, 감독, 코치, 트레이너) 선발에 대한 심의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별표 제1호, 제2호로 심의한다.

1. 지도 실적(국내.외대회 입상 실적) : 10점

단, 국가대표 선수 입상 실적, 국가대표 지도자 및 소속 지도자 동일하게 적용

2. 지도 경력(지도 기간) : 10점

3. 경기지도자 자격증 : 10점 (1급, 2급)

단, 심의기준은 1급을 기준으로 함.

4. 국가대표 선수 경력(본인) : 10점

5. 국제.국내대회 입상 경력(본인) : 10점

6. 직전 소속 단체장 (시.도연맹회장, 회원종목단체장) 추천서(10점)

7. 면 접 : 40점

(해당 종목 평판 조사 가능)

㉠ 지도력 및 리더쉽(10점)

㉡ 자질 및 가치관(10점)

㉞ 팀 운영능력(20점)

※ 운영계획서 PPT 발표

8. 총점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적용하며, 서류 및 면접위원의 최고점과 최하점은 제외하고 평가를 실시한다.

9. 국가대표 지도자 및 트레이너 선발은 서류심사(60) 및 면접심사(40) 평가를 통해 선발하며, 총점 100점 만점 기준으로 60점 미만 지원자는 선발하지 않는다.

② 전담지도자(청소년대표, 꿈나무선수) 선발기준은 제4조제6항에 의거하여 제1항으로 하되, 선수, 지도자 경력은 근대5종 경력만 적용하여 선발한다. 다만, 전문지도자(후보선수, 청소년대표, 꿈나무선수)는 제4조제6항을 따른다.

제10조(국가대표 선수 선발 절차) ① 국가대표 선수는 본 연맹의 국가대표 선발규정에 따라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본 연맹의 경향위는 선발일정 등 세부사항을 결정하고 국가대표 선수의 선발 결과를 심의한 후 후보자를 추천하면 본 연맹 장은 추천받은 후보자를 국가대표로 선발하고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② 국가대표 선수는 본 연맹의 국가대표 선발규정이 정한 개인기록, 선발전 순위 및 각종 대회 누적 순위 등 근대5종 특성을 반영하여 선발한다.

③ 본 연맹의 장은 제6항의 선발을 제외한 국가대표 선수 선발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선발일 2개월 이전에 공고하여야 하나, 국제근대5종연맹의 대회 참가요건의 공지가 늦어지는 경우와 감염병과 자연재해 등 경향위에서 불가피하게 일정을 조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공고 지연에 대한 사유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고 선발 공고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④ 본 연맹의 장은 국가대표 선수를 선발하면 즉시 선발 사유 및 과정 일체를 포함한 선발개요를 공고하여야 한다.

⑤ 본 연맹의 장은 종합대회의 출전권을 획득한 선수를 근대5종 국가대표 선수로 체육회에 추천한다. 단, 종합대회의 출전권이 국가에 배당되어 해당 국가대표를 선발할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선발하여 체육회에 추천하여야 한다.

⑥ 국가대표로 선발된 선수의 부상, 국가대표 훈련 소집 및 국제대회 출전 불응 등에 따른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심의없이 국가대표 선발순위에 따라 차순위 선수가 국가대표 선수가 된다. 다만, 차순위가 동률일 경우에는 경향위에서 심의하여 선발한다.

⑦ 우수선수 육성이 요구될 경우, 기량 향상이 월등하다고 인정되는 선수에 한해 선발전과 상관없이 경향위에서 추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회 심의 후 본 연맹의 장이 국가대표 선수로 선발할 수 있다. 단, 본 조항에 따른 추천 선발에 관한 내용은 반드시 선발전 공고시 명확히 공지되어야 하며, 선발전 공지 이후에는 추천선발 여부 및 그 내용을 중도 변경할 수 없다.

⑧ 이 규정에서 정한 국가대표 이외에 연령별 국가대표를 선발하는 경우 본 연맹의 경향위는 종목별대회의 특성에 따라 선발의 요건, 비율, 일정 및 경기력 지표의 기준 등 세부사항을 사전에 정하여 심의일 1개월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국가대표 선발) ① 국가대표 선발전은 최소 년 1회 이상 개최한다. 다만, 올림픽대회 및 아시아경기대회를 대비한 선발전은 별도로 정한다.

② 국가대표 지도자 및 경향위 위원의 추천 선발 인원은 총 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고, 최근 1년 이내 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 및 월드컵(결승 포함)대회에서 개인 3위 이내 입상 선수에 한하여 제10조제7항에 따라 대상으로 추천할 수 있으며, 경향위의 추천이 있으면,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본 연맹의 장의 결정으로 우선 선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추천 선발된 선수는 추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대회성적, 향상도, 지도자 평가보고서, 경향위 회의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선발전을 통한 국가대표 선수 선발은 다음과 같다.

1. 국가대표 선발전 성적으로 선발함을 원칙하며, 세부종목 적용과 선발방식, 선발인원을 경향위에서 정한다.

2. 각 종목별 세부사항은 국제근대5종연맹 경기규정에 준하여 실시하며, 국가대표 선발전 참가인원이 25명이 이상일 경우에는 예선전을 거쳐 18명을 선발하여 결승전을 실시하며, 결승전 성적순으로 선발한다.

⑤ 경기기록분석을 통한 국가대표 선수 선발은 다음과 같다.

1. 최근 1년간 국제대회(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 월드컵) 및 연맹 주최대회(회장배, 문체부, 선수권, 대한체육회장배), 전국체전 성적을 국제근대5종연맹 경기규정 세계랭킹(PWR) 적용하되, 국제대회 기록은 레벨 1, 국내대회 레벨 2(근대4종 레벨 3)를 적용하여 국가대표 선발 경향위 개최 전 최근 1년간 출전한 대회 중 상위 4개 대회 기록으로 경향위에서 선발 심의하여 본 연맹 장이 정한다. 다만, 후보선수, 청소년대표, 꿈나무선수 선발은 국내대회 기록을 근대5종 레벨 1, 근대4종 레벨 2, 근대3종 레벨 3, 근대2종 레벨 4을 적용하며, 각 대회 부문별(근대2종, 근대3종, 근대4종) 참가선수 인원내 따라 1위의 점수를 달리 적용한다.

⑥ 부상 선수에 교체는 제10조제6항에 따른다.

제12조(국제대회 파견 국가대표 선발 기준) ① 제10조제1항 따라 올림픽대회(아시아지역예선전) 및 아시아경기대회를 대비하는 선발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국가대표 선발전은 2회를 실시하되, 제11제4항 제2호에 따라 선발전을 실시하며, 국제대회 파견 선수와 강화훈련은 국가대표 선발전 최종 성적 순위로 하여 경향위에서 심의 후 본 연맹 장의 정한다. 다만, 국가대표 선발전 기간동안 국가대표 강화훈련은 현 국가대표선수를 대상으로 제2차 선발전 개최 전일까지 실시한다.

2. 국가대표 선발전 성적 순위는 세계랭킹(PWR) 레벨 1을 적용하여 선발한다. 다만, 제11조제2항에 따른 국가대표 선발 시에는 제11조제3항에 따라야 한다.

3. 제2차 선발전 참가선수는 제1차 선발전 성적 결과로 18명으로 제한한다.

② 올림픽대회 출전권을 획득한 선수를 대상으로 한 올림픽대회 파견선수 선발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세계 랭킹(PWR) 순위

2. 올림픽 당해년도 및 전년도 세계선수권대회, 월드컵(결승포함) 1 ~ 3위 입상 상위자, 단, 월드컵 입상 순위가 동률일 경우 월드컵 결승이 우선한다.

3. 아시아 지역 예선전 순위

4. 올림픽 엔트리 제출 기한까지 파견선수를 최종 선발하며, 파견 대상자 중 부상 등으로 파견 선수 교체시에는 제10조제6항에 따라 상기 제1호내지 제4호에 따라 차순위 선수를 파견한다.

③ 아시아경기대회와 올림픽대회 아시아지역예선전 파견선수 선발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1항에 따른 국가대표 선발전 성적순

2. 파견 대상 중 부상등으로 파견선수 교체시에는 제10조제6항에 의거하여 제1호에 따라 차순위 선수를 파견한다.

④ 세계선수권대회와 월드컵(결승 포함), 아시아선수권대회 파견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올림픽대회 출전권 및 랭킹포인트 부여대회 파견은 제10조제7항과 제8항을 우선 적용하여 파견하되, 이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 의거하여 선발된 대상을 파견한다.

2. 제3항을 제외한 국제대회는 국가대표 지도자의 추천으로 경향위에서 심의 후 본 연맹 장이 정한다.

3. (청소년, 유소년, 트라이애슬, 비아틀)세계선수권대회는 사업 성격을 고려하여 경향위에서 심의.의결하여 본 연맹의 장이 정한다.

4. 아시아(청소년, 유소년 등)선수권대회는 국가대표 지도자(전임.전담지도자)의 추천으로 위원회의 심의후 본 연맹 장이 정한다.

5. 파견 대상 중 부상등으로 파견선수 교체시에는 제10조제6항에 의거하여 차순위 선수를 파견한다.

6. 국가대표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경향위에서 심의.의결하여 정한다.

7. 국가대표가 출전하지 않는 월드컵 및 기타 국제대회 파견에 대해 일반선수가 출전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회 출전 비용은 자비부담을 원칙으로 하여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국제종합대회(올림픽대회 및 아시아경기대회 등)의 경기임원 파견은 제7조에 따라 파견하며, 국제대회(UIPM, AMPC 주최대회) 경기임원 파견시에는 경향위의 심의 후 본 연맹의 장이 정한다.

⑥ 국외전지훈련은 대한체육회(체육진흥공단 포함) 지원 및 연맹 사업계획에 따라 경향위의 심의 후 본 연맹 장의 정한다.

제13조(국가대표 선수 자격) ① 국가대표 선수는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종목별 국제연맹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 국적이 아닌 사람이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각종 국제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국가대표 선수는 본 연맹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으로 한다. 다만, 선발 당시 선수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은 한시적으로 본 연맹의 소속 선수로 등록하여야 한다.

제1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국가대표, 전담팀, 경기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및 그 회원단체 또는 지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 등의 체육단체(이하“체육회 관계단체”라 한다.)에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되지 아니한 사람
4.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폭력행위로 1년 미만의 자격정지 징계 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자격정지 기간을 가산하여 그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사람.
5.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폭행행위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6.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성희롱, 성매매 또는 성폭력과 관련된 비위 행위(제8호의 강간·강제추행 제외)로 1년 미만의 자격정지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자격정지 기간을 가산하여 그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사람
7.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성희롱, 성매매 또는 성폭력과 관련된 비위 행위(제호의 강간·강제추행 제외)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람
8. 체육회 관계단체 등에서 승부조작, 국가대표 및 강화훈련 선수 선발과 관련한 불공정 행위(부정선발, 담합, 금품수수), 훈련비 횡령, 배임, 강간·강제추행 행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람
9. 음주운전 등과 관련한 행위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처벌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
 - 가.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나. 5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10. 도박과 관련한 행위로 형법 제246조 또는 제247조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
 - 가. 1천만원 초과인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11. 이사회에서 사회적 통념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람
12. 학교폭력, 인권침해 등의 사회적 물의로 인하여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자격정지 또는 출전정지 1년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13. 학교폭력, 인권침해 등의 사회적 물의로 인하여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1년 미만의 자격정지 또는 출전정지 징계 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날부터 징계기간을 가산하여 그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사람
1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

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15. 선수를 대상으로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를 저지른 체육지도자(「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을 포함한다)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 범죄

제15조(국가대표 선발의 이의신청) ① 본 연맹의 장은 선발된 국가대표의 명단을 공개한 후 1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두어야 한다.

② 본 연맹의 장은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절차를 준용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체육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사람은 국가대표 선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본 연맹에 등록된 선수

2. 국가대표 선발전에 출전한 선수의 보호자, 지도자, 소속팀의 장

④ 본 연맹 장이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처리 또는 체육회 보고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체육회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단체에 대해 국가대표 훈련지원 사업 조정, 재정지원 제한 등 필요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5조의2(선발 관련 제척, 기피 및 회피) ① 국가대표 선발과 관련하여 본 연맹의 임원 또는 경향위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회의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 심의 대상자가 본인 또는 친족(「민법」 제777조에 의한 친족을 말한다)인 경우

2. 심의 대상자와 동일한 소속팀인 경우

3. 그 밖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해관계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이사회 또는 경향위에 기피 또는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사회 또는 경향위는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해당 임원 또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의결에 참여한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은 무효로 하며, 이사회 또는 경향위는 해당 임원 또는 위원을 배제하고 이를 즉시 재심의·의결하여야 한다.

제15조의3(임원의 경기력향상위원회 겸직 금지) ① 대한체육회 및 본 연맹의 임원은 경기력향상위원회의 위원을 겸직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 연맹의 장은 특정 분야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겸직을 허용할 수 있다.

제16조(자료의 보관) 국가대표 선발과 관련한 자료는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하며, 이의신청 시 확인이 가능하도록 선발과 관련한 근거자료(선발결과 기록지, 회의 자료 및 회의록 등)는 5년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국가대표 선수단의 임기) ① 국가대표 선수단의 임기는 체육회 및 본 연맹에서 정할 수 있으며,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합대회 및 종목별대회의 국가대표로 확정된 날로부터 대회 종료 후 선수단 해단식 개최 일까지로 한다.

② 국가대표 지도자 및 전담팀의 임기는 아시아경기대회 및 올림픽대회 2년 주기의 임기를 보장하며, 1회에 한해 재평가를 거쳐 연장될 수 있다. 다만, 전 세계적인 자연재해나 감염병으로 올림픽 및 아시아경기대회 개최가 연기 또는 취소될 경우에는 경향위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③ 국가대표 지도자 및 트레이너에 대한 재평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제14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즉시 해임한다.

1. 올림픽 메달을 획득할 수 있도록 지도한 경우
2. 아시아경기대회에서 남·여 개인·단체·혼성계주가 실시될 경우 3개 이상, 남·여 개인·혼성계주가 실시될 경우 2개 이상, 남·여 개인전만 개최될 경우 1개 이상의 금메달을 획득할 수 있도록 지도한 경우

④ 국가대표 선발전(기록분석 선발 포함)으로 선발된 국가대표 선수는 차기 국가대표 선발전까지로 한다. 다만, 제14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즉시 국가대표 선수 자격을 박탈한다.

제18조(국가대표, 전담팀의 의무)

① 국가대표 지도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대표 선수의 훈련계획 수립 및 지도와 관리
2. 국가대표로 출전한 대회의 결과보고 및 선수 평가
3. 국가대표 선수, 트레이너 선발에 대한 의견 제시
4. 국가대표 선수의 경기력 부진 및 부상 및 국제대회 파견 선수의 대회 미참가 등에 따른 훈련 제외 건의. 이때 지도자는 해당 선수의 제외가 필요한 사유 및 기간을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여 건의하여야 한다.
5. 국가대표 선수의 국내·외 전지훈련과 국제대회 출전 시 인솔
6. 국가대표로 출전하는 대회의 경기규정 및 소청규정의 숙지와 심판판정에 대한 이의제기
7. 국가대표 선수의 합숙훈련에 대한 생활지도와 인권 및 안전보호

8. 선수의 부상 예방 및 관리

9. 기타 국가대표 선수의 경기력 향상과 관련되는 사항 등

② 의료 면허 소지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대표에 대한 해당 전문분야 지원

2. 의료 분야의 활동계획 및 강화훈련 선수 현황 작성, 지도자에게 선수별 상태에 대한 의견 제시

3. 국가대표 지도자가 경기력 향상 및 선수보호 등과 관련하여 지시한 사항의 이행

4. 기타 경기력 향상과 관련한 사항

③ 트레이너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대표 지도자 및 선수에 대한 해당 전문분야 지원

2. 체력 컨디셔닝, 기술, 심리 등의 트레이너는 해당 전문분야의 활동계획 및 강화훈련 선수 현황 작성, 지도자에게 선수별 상태에 대한 의견 제시

3. 영상 및 전력분석 트레이너는 훈련 및 경기 분석결과 보고

4. 훈련장비 트레이너는 장비 현황 보고, 운용계획 수립 및 선수별 장비 관리

5. 국가대표 지도자가 경기력 향상 및 선수보호 등과 관련하여 제안한 사항의 이행

6. 기타 경기력 향상과 관련한 사항

④ 국가대표 선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대표 지도자가 계획한 훈련 참여

2. 국가대표 지도자가 경기력 향상과 관련하여 지시한 사항의 이행

3. 국가대표 지도자가 정당한 인권 및 안전보호를 위하여 제안한 사항의 이행

4. 세계반도핑기구에서 금지하는 약물의 복용금지

제19조(국가대표 선수의 훈련 일시제외, 국가대표선수 교체)

① 국가대표로 선발된 선수가 입촌 후 주어진 훈련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고, 훈련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부상 및 기타 사유로 정상적인 훈련에 참여하지 않아 국가대표 감독이 제18조 제1항 제4호의 건의를 한 경우, 경향위는 심의를 거쳐 해당 선수를 상당한 기간 동안 훈련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경기력향상위원회는 제18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지도자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훈련 제외 여부를 심의, 결정한다. 자료가 부적합하거나 불충분한 경우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의료기관으로부터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선수는 진단일부터 강화훈련에서 일시제외하여 치료에 전념하여야 한다.

④ 4주 이상의 부상으로 강화훈련에서 일시제외한 선수가 훈련 복귀를 요청할 경우에는, 치료 종료 후 본 연맹 지정 의료기관(진천선수촌 의학센터)의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국가대표로 선발된 선수가 치료목적으로 강화훈련에서 일시제외 하는 경우, 일시제외 기간이 체육회 강화훈련 운영지침 제26조 제2항에서 규정한 총 60일을 초과하면 제10조 제6항에 따라 대체 선수를 선발하고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국가대표 선수는 국제대회 출전에 앞서 부상 상황을 정확하고 성실하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고의로 은폐하거나 형식적으로만 보고하여 국제대회 현장에서 경기 불참 등의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 국가대표 감독은 대회종료 후 제18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경향위에 해당 선수의 훈련제외를 건의할 수 있고 경향위는 위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심의 의결한다. 단, 보고가 불가능하였거나 불가피한 부상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0조(성실의무 및 품위유지) 국가대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하여 훈련과 대회에 임하고 국가대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삼가고 국민에게 자랑스러운 국가대표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국가대표의 보호 및 지원) 체육회와 본 연맹은 국가대표의 인권과 권익을 보호하고 훈련여건의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적절한 수준의 훈련수당 지원
2. 국가대표의 인권과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고충처리 절차 마련
3. 선수의 부상 예방 및 관리

제22조(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규정의 제·개정) ① 본 연맹은 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규정을 준용하여 본 연맹의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여야 한다.

② 본 연맹은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에 반드시 체육회 강화훈련에 참가하는 국가대표, 전담팀의 선발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본 연맹은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을 제·개정한 후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지난 후에 다시 개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규정 개정 후 시행에 있어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6개월 이내에 제·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변경사유에 대해 체육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23조(국가대표 훈련의 관리) ‘국가대표 훈련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은 체육회의 「강화훈련운영지침」으로 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2011. 2. 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2011. 2.23.)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5. 21>

제1조(국가대표 지도자 및 선수선발 규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국가대표 지도자 및 선수 선발 규정은 삭제되고 이 규정으로 대체한다. (2013. 5.21.)

제2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2013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2013. 5.21.)

부 칙<2015. 2.24>

제1조(경기력향상위원회 규정 및 국가대표 선발 규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경기력향상위원회 규정은 삭제되고 국가대표 선발 규정으로 운영한다. (2015. 2.24.)

제2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015. 2.24.)

제3조(경과조치) 제14조(결격사유)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발생한 행위로 형벌 또는 징계를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2015. 2.24.)

부 칙<2017. 3. 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0.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2조(국가대표선발) 제2항에도 불구하고, 2018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파견 국가대표 선발전은 동 규정 개정 후 제1차 선발전은 경기력향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1개월 이내에 실시할 수 있으나, 제2차 및 제3차 선발전은 동 규정 개정일 3개월 후에 개최한다.

부 칙<2018.12. 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 체육회의 국가대표 선발규정에 따라 행한 사항은 이 규정의 의해 시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적용) ① 이 규정 제14조제9호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전문개정의 시행일인 2019. 6.25.이후 처벌을 받은 사람에게 적용한다.

② 이 규정 제14조제10호는 형법 제246조, 제247조의 전문개정의 시행일인 2013. 4. 5.이후 처벌을 받은 사람에게 적용한다.

부 칙<2021. 8.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이 개정된 후 제17조(국가대표 선수단의 임기)제2항은 대한체육회 지침에 의거, 재평가에 따른 재임용 적용은 2022년 항저우아시아경기대회 이후 국가대표 지도자(트레이너 등 포함)로 선발된 이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2. 3.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이 정한 제12조(국제대회 파견 국가대표 선발 기준) 제1항은 코로나19 등의 감염병과 천재지변으로 불가항력적인 일이 발생한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다음과 같이 선발전을 개최한다.

1. 국가대표 선발전은 3회를 실시하되, 감염병과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일로 인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불참할 수 있으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선수는 3회를 출전하여야 하며, 참가신청은 제1차 선발전부터 신청하여야 하고, 파견 선수와 강화훈련은 국가대표 선발전 최종 선발 성적 결과로 경향위 심의.의결로 실시한다.

2. 상기 제1호에 따라 국가대표 선발전 성적 순위는 세계랭킹(PWR) 레벨 1을 적용하되 3차에 걸쳐 실시된 선발전 중 상위 2개 선발전에 각각 50%을 적용하여 선발한다. 다만, 제11조 제2항에 따른 국가대표 선발 시에는 제11조제3항에 따라야 한다.

3. 제2차 선발전 및 제3차 선발전 참가선수는 제1차 선발전 성적 결과로 24명으로 제한하되, 불가항력적인 일로 참가하지 못한 선수를 포함한다.

부 칙<2022.10.0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연맹 정관 제15조(이사회의 소집)제7항에 의거하여 개정되는 동 규정 제7조(위원회운영)제3항에도 불구하고, 원격통신 수단 등으로 동 규정 개정 전에 개최된 위원회는 연맹 정관과 대한체육회 지침에 의거하여 개최된 것으로 한다.

부 칙<2023.02.0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 11.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 3. 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6. 4. 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근대5종 국가대표 지도자 공채 서류심사 심의평가표

(응시분야 : / 응시자 :)

항 목 \ 점 수		10		8		6		4	배점	점수	비 고
지도 실적	국제	올림픽	세계선수권	월드컵	아시안게임	세계청소년	아시아선수권	유소년	10		- 최고 지도실적만 적용 (국제 또는 국내 택)
	국내			전국체전		연맹 주최대회					
지도 경력	대표팀	6년 이상		4년 이상		3년 이상		3년 미만	10		- 국가대표 또는 팀 지도경력중 택하여 적용
	일선팀	8년 이상		6년 이상		4년 이상		4년 미만			
경기지도자자격증		1급						2급	10		- 근대5종 및 세부종목 (펜싱 등)
선수력	대표팀	8년 이상		5년 이상		3년 이상			10		- 국가대표 및 팀 선수 경력 택 선택 ※ 일선팀 (총 선수활동기간)
	일선팀	10년 이상		7년 이상		5년 이상		3년 이상			
입상경력	국제	올림픽(10)	세계대회(9)	월드컵(8)	아시안게임(7)	세계청소년	아시아선수권		10		- 최고 입상 경력
	국내					전국체전		연맹주최대회			
직전 소속단체장 추천서		추천서 제출							10		
총 점(60점)									60		

면접시험채점표

응 시 부 분										
성 명			생년월일							
서류점수(60점)	점									
채 점 요 소	배점	점 수								
1. 지도력 및 리더쉽	10점	- 지도력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부족	매우 부족				
		3	2.5	2	1.5	1				
		- 리더쉽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부족	매우 부족				
		4	3	2	1	0.5				
		- 소 통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부족	매우 부족				
		3	2.5	2	1.5	1				
		2. 가치관 및 자질	10점	- 가치관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부족	매우 부족				
3	2.5			2	1.5	1				
- 자 질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부족	매우 부족				
4	3			2	1	0.5				
- 대처능력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부족	매우 부족				
3	2.5			2	1.5	1				
3. 팀 운영능력 (비전, 방안 등)	20점			- 운영방안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부족	매우 부족				
		10	8.5	7	5	3				
		- 비 전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부족	매우 부족				
		10	8.5	7	5	3				
계	40점	점								
합계(서류+면접)	100점	점								
심 사 위 원		(서명)								